



## 수출대금채권 매입약정서

다음 당사자들은 [ ] 년 [ ] 월 [ ] 일 다음과 같이 이 수출대금채권 매입약정서(이하 “**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그 등기된 사무소를 [ ] 에 두고 있는 [ ] (이하 “**갑**”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그 본점을 서울 중구 다동 39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을**”이라 한다).

### 전 문

갑은 을이 수용할만한 회사 또는 회사들(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관련수출계약(이하 총칭하여 “**수출계약**”이라 한다)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였거나 선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에 대하여 수출대금채권(이하 “**수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다.

갑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수출대금채권을 을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을은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고자 한다.

이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수출대금채권의 양수도)

- ①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양식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수출대금채권의 매매대금과 당해 수출대금채권의 매매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매입일**”이라 한다)을 명시한 매입요청서(이하 “**매입요청서**”라 한다)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을에게 당해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입요청서는 매입일보다 [ ] 영업일 전(단 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이 가능하다)까지 을이 수령하여야 하며 매입일은 영업일이어야 한다. 갑은 매입요청서를 을에게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전자교환문서(EDI)로 을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교환문서(EDI)는 이 약정상의 매입요청서로 간주된다.
- ② 매입요청서를 수령한 을은 당해 매입요청을 승낙 또는 거절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을이 매입요청서에 명시된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일 오전 [ ] 이전까지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당해 매입일 오전 [ ] 이전까지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을이 어느 수출대금채권을 매입요청서의 요청대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갑은 매입요청서에 명시된 매입일에 당해 수출대금채권을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없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을은 매입일에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 ③ 을은 제4조에 명시된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병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일에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대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이 약정상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1항에 따라 매입요청을 한 수출대금채권의 매입으로 이 약정에 따라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미지급 수출대금채권의 총합산액은 갑과 을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매입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조 (환매 및 지연이자)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당해 수출대금채권을 환매하기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해 수출대금채권의 만기일 영업시간 이내에 무조건 환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해당 만기일 영업종료 이전까지 병 또는 갑으로부터 을이 매입한 모든 수출대금채권이 지급될 것임을 보장한다.

1. 병이 관련 수출대금채권 전부를 그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2. 을과 갑 간에 기체결된 “외국환(수출입 등)거래약정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갑의 의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을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을과 갑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4. 갑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행위(부작위를 포함함)로 이 약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위반 또는 불이행이 치유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 가능하다면 을로부터 최고 후 [ ]일 이상 그러한 위반 또는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어느 수출대금채권에 관하여 제3조 제8항에 명시된 보장이 위반된 때.
6.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 경우 및/또는 을이 객관적인 자료(전문가의 조언, 언론보도, 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사항, 갑이 공표한 사항 등을 포함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갑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약정상의 환매대금은 수출대금채권의 금액에서 i) 당해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ii) 만기전 환매인 경우, 환매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상응하는 할인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환매요청이 있거나 자동환매가 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수출대금채권의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수출대금채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수출대금채권의 환매절차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환매에도 불구하고 을이 환매대금 전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기 전까지



는, 을은 수출대금채권을 수령하여 환매대금에 충당할 권한이 있다. 을이 환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에 수출대금채권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그 수출대금채권의 수령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 ④ 관련 매입일 이후 갑이 수출대금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령한 현금, 수익, 수표, 어음 기타 지급지시증서가 있을 경우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수령한 형태 및 통화 그대로 (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을에 배서하여) 을에게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 ⑤ 갑이 이 약정상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해당 지급일 현재의 할인율에 연 [     ]%를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이러한 연체이자 이외에도, 을의 청구시, 갑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을이 병으로부터 어느 수출대금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당해 수출대금채권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하 “조기지급”이라 한다), 을은그 조기지급일로부터 당해 수출대금채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상응하는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 (갑의 진술 및 확약사항)

- ① 갑의 매입요청서 및 기타 관련 서면통지에 명시된 모든 내용(수출대금채권의 금액 및 지급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모든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항상 진실하고 정확할 것이다. 갑은 병이 수출대금채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수출계약상의 모든 조치(일체의 문서의 병에의 송부 포함)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갑은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매입일로부터 병이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수출대금채권의 금액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병의 의무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보장한다.
- ② 관련 수출계약상 수출대금채권의 양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약정, 이 약정에 따라 갑이 교부할 통지, 확약서 또는 기타 문서의 작성, 교부 및 이행 또는 갑에 의한 이 약정의 이행 또는 준수에 의하여 위반되거나 위반될 수 있는 법령, 규정, 갑의 정관, 기타 갑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현재 존속하는 여하한 계약, 문서 또는 합의는 없다.
- ③ 갑은 수출대금채권, 이 약정의 체결, 이행 및 이 약정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동의, 인가, 승인 등을 관련 당국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관련 당국에 대한 모든 신고 내지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
- ④ 을이 수출대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갑은 <별첨>의 양식으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병에게 수출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병이 을에게 직접 또는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출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갑은 이 약정상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갑은 이 약정의 초안 작성, 협상, 체결, 교부, 이행 및 기타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비용(법률자문비용을 포함)을 을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수출대금채권을 을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 이전하거나 양도, 이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수출계약의 수정, 수출대금채권의 지급조건 변경,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한 병의 의무에 대한 권리포기 등 당해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을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⑦ (i) 제4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제4조 제6항에 명시된 선적서류를 송부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명의로 병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거나 선적서류가 송부되도록 한다. 이 경우 선적서류의 송부는 갑의 책임과 비용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갑은 선적서류의 송부 즉시 을에게 선적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병에게 교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위 (i)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적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 송부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선적서류의 인증된 사본 및 병에 대한 선적서류의 교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이 경우, 갑은 이러한 제출의무의 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면제로 인하여 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을의 법률자문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을 배상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 소송, 집행, 기타 법적절차 등으로 부터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오로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손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갑은 을에게 매입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언제든지 병에게 관련 매입일 이전까지 당해 선적서류의 원본이 송부되게 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 제3조 제7항 (i)에 규정된 문서 및 증빙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갑은 각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병이 해당 만기일에 당해 수출대금채권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 제4조 (선행조건서류)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을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최근 감사필 제무제표 사본
2. 갑의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3. 갑을 대리하여 이 약정, 매입요청서 및 이 약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문서를 작성할 사람에 대한 대표이사의 위임장 및 수임인의 서명감 (필요한 경우)
4. 당해 수출계약 및 수출대금채권 관련 수출승인서 및 기타 정부 인허가서 사본 (요구되는 경우)
5. 제3조 4항의 양도통지가 병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을이 만족할 수 있는 증빙(을이 요구할 경우)
6. 제3조 제7항의 적용하에서 당해 수출대금채권 관련 상업송장, 선하증권, 세관 발



- 행 수출면장을 포함한 모든 선적서류의 원본
7. 당해 수출대금채권 매입일 현재 갑의 진술 및 확약사항이 상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갑을 대표할 권한있는 자에 의한 확인서 또는 을이 만족할 수 있는 증빙

#### 제5조 (손실보상)

- ① 갑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 ② 갑은, 관련 만기일 전 갑이 수출대금채권의 환매하거나 병이 지급하거나, 수출대금채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요청된 여하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선적서류원본을 송부하도록 위임한 것을 포함하여 을이 이 약정의 체결 및 수출대금채권의 매입 등과 관련하여, 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을의 법률자문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을 배상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 소송, 집행, 기타 법적절차 등으로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오로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손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 약정에서의 을의 손실 및 비용은 실제 자금조달 비용(부대비용 포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운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④ 여하한 사유로 이 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을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제한되며 그로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특별손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일반조항)

- ① 이 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규율된다.
- ② 이 약정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약정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외국환(수출입 등)거래약정서와의 사이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우선한다. 외국환(수출입 등)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은 이 계약에 의한 거래에 준용된다.
- ④ 이 약정은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 제7조 (정의)

- ① “영업일”이라 함은 이 약정의 각 별지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기타 대한민국 소재 은행들이 휴점하도록 요구되는 날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는 일자를 말한다.



- ② “할인율”이라 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을 말하며, “할인료”라 함은 각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당해 수출대금채권 금액에 할인율과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실제 날수(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360일 또는 365일로 나누어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이 약정에서 “기준금리”라 함은 이 약정의 별지 1부터 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각 지급통화별 기준금리를 말한다.
- ④ 당해 매입일 1 영업일 이전까지 매입요청서가 을에 도달하지 않아 매입일로부터 1 영업일 이전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매입요청서가 을에 도달한 날의 가장 최근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⑤ “가산금리”라 함은 연 [ ] 퍼센트의 이율 또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이율을 말한다.
- ⑥ “지급통화”라 함은 수출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 ⑦ “만기일”이라 함은 개개의 수출대금채권에 관하여 갑이 병에 의하여 당해 수출대금 채권의 지급되는 날로 진술 및 보장한 날을 말한다. 다만 을은 위 날과 다른 날을 만기일로 정할 수 있다.
- ⑧ “매입대금”이라 함은 개개의 수출대금채권에 관하여 당해 수출대금채권 금액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모두 기재일자에 이 약정서를 정히 작성하였다.

년 월 일

갑:  
대표이사

인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첨>

채권양도통지서양식  
NOTICE OF ASSIGNMENT

Date: \_\_\_\_\_

To : [ *Relevant Buyer* ]

Dear Sirs:

We refer to [description of the relevant export contract] dated [ ] made between yourselves and ourselves (the "Contract") and the shipment (the "Shipment") that we have made pursuant thereto and is related to the invoice as specified below (the "Invoice").

**Details of Invoice**

Invoice No.:  
Invoice Date:  
Invoice Amount:  
Maturity Date:

NOW WE HEREBY GIVE YOU NOTICE

1. By an Export Receivable Negotiation Agreement dated [ ] (the "Assignment") made between Citibank Korea Inc. (the "Bank") and ourselves, we have assigned to the Bank all moneys payable by yourselves to us in relation to the Shipment under the Contract.
2. We continue to be responsible to you for the performance of all of our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nd the Bank assumes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therewith.
3. We instruct you to mak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in relation to the Shipment under the Contract and the Invoice on or before the maturity date directly to the account of the Bank (account no. ) opened with [ ] or other account to be designated by the Bank.

Please note that this notice of assignment once received by you shall be irrevocable and binding on us and shall not be amended or cancelled without the Bank's written consent.

Yours faithfully,

By \_\_\_\_\_



## 별지 1. 지급통화가 USD인 경우 기준금리

### 제 1 조 (지급통화가 USD인 경우 기준금리)

지급통화가 USD인 경우, 다음의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1. 기간물 SOFR.
2. 기간물 SOFR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SOFR 평균.
3. SOFR 평균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OFR**”라 함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SOFR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newyorkfed.org> 또는 그 밖에 SOFR 산출기관이 SOFR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의미한다.
2. “**SOFR 평균**”이라 함은 적용되는 해당 만기(tenor)에 대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SOFR 평균의 승계 관리인)이 발표한 SOFR 복리평균값을 의미한다.
3. “**계산기간**”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관련 지급금액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4. “**기간물 SOFR**”라 함은 해당 계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CME 그룹이 산출하여 고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FR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한다.



## 별지 2. 지급통화가 GBP인 경우 기준금리

### 제 1 조 (지급통화가 GBP인 경우 기준금리)

지급통화가 GBP인 경우, 다음의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1. 기간물 SONIA.
2. 기간물 SONIA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ONIA”라 함은 영국은행(Bank of England 또는 SONI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ankofengland.co.uk> 또는 그 밖에 SONIA 산출기관이 SONI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ICE Benchmark Administration,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의미한다.
2. “계산기간”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관련 지급금액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3. “기간물 SONIA”라 함은 해당 계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영국은행 또는 SONI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이 선정 또는 추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NIA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한다.



### 별지 3. 지급통화가 EUR인 경우 기준금리

#### 제 1 조 (지급통화가 EUR인 경우 기준금리)

지급통화가 EUR인 경우, 다음의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1. EURIBOR
2. EURIBOR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URIBOR**”이란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 (또는 그로부터 동 금리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가 관리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Euro Interbank Offered Rate를 의미한다.
2. “**계산기간**”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관련 지급금액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 별지 4. 지급통화가 CHF인 경우 기준금리

### 제 1 조 (지급통화가 CHF인 경우 기준금리)

지급통화가 CHF인 경우, 다음의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1. SARON (Compounded in advance).

1. SARON (Compounded in advance)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금리.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SARON**”이란 SIX Swiss Exchange AG (또는 SARON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ix-group.com> 또는 그 밖에 SARON의 산출기관이 SARON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wiss Average Rate Overnight를 의미한다.

3. “**SARON (Compounded in advance)**”이라 함은 계산기간 개시일의 직전 무위험금리 영업일로부터 소급하여 해당 계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매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일일금리를 복리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한다.

4. “**계산기간**”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관련 지급금액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5. “**무위험금리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취리히의 은행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의미한다.

6. “**일일금리**”라 함은 어느 무위험금리 영업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가.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SARON



- 나.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SARON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중앙은행금리와 중앙은행금리 조정분을 합산한 연 이자율
- 다.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SARON이 제공되지 않고,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중앙은행금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가장 가까운 무위험금리 영업일(단,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로부터 5 무위험금리 영업일 이내의 날에 한함)에 대한 중앙은행금리와 중앙은행금리 조정분을 합산한 연 이자율

위와 같이 계산된 일일금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로 반올림된다.

- 7. “중앙은행금리”라 함은 스위스 국립은행(Swiss National Bank)에서 발표하는 스위스 국립은행의 정책 이자율을 의미한다.
- 8. “중앙은행금리 조정분”이라 함은 무위험금리 영업일 업무종료시점의 중앙은행금리와 관련하여, SARON이 제공되는 직전 5 무위험금리 영업일 동안의 중앙은행금리 스프레드의 20% 절사 산술평균으로서 은행이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 9. “중앙은행금리 스프레드”라 함은 어느 무위험금리 영업일과 관련하여, 은행이 계산한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에 대한 SARON과 해당 무위험금리 영업일 업무종료 시점의 중앙은행금리 사이의 차이(연 이자율로 표시)를 의미한다.



## 별지 5. 지급통화가 JPY인 경우의 기준금리

### 제 1 조 (지급통화가 JPY인 경우 기준금리)

지급통화가 JPY인 경우, 다음의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1. 기간물 TONA.
2. 기간물 TONA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ONA”라 함은 일본은행(Bank of Japan, 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oj.or.jp> 또는 그 밖에 TONA 산출기관이 TON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의미한다.
2. “계산기간”이라 함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관련 지급금액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3. “기간물 TONA”라 함은 해당 계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본은행 (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이 관리하고, QUICK Benchmarks Inc. 또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른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이 고시한 TONA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한다.